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44호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3. 10. 3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44호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중소기업청장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3년내, 40%) 등을 준수하는 경우 중견기업 투자 등에 제한이 없는 반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은 투자대상이 중소기업 투자로 비교적 좁게 허용되고 있어, 최근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간 M&A 등에 대한 자금 공급에 한계가 있음.

세컨더리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한 구주를 인수하는 시장을 조성되어 있으나, 유한책임조합원(LP)이 보유한 벤처펀드 지분(펀드의 '구주')을 인수하는 유통시장은 아직 조성되어있지 않아 연기금·금융기관 등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주요 출자자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으로 다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를 허용함.(안 제4조의2 제2호 신설)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당 조합의 출자 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4조의2제3호 신설)

3. 의견 제출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60, 팩스 042-472-3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의1(프로젝트투자)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업이란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및관리규정」 제7조의1에서 정한 프로젝트투자를 말한다.</p> <p>1. < 신설 ></p> <p>2. < 신설 ></p> <p>3. < 신설 ></p>	<p>제4조의2(프로젝트투자 등)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투자금액의 합계는 해당 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p> <p><u>1.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및관리규정」 제7조의1에서 정한 프로젝트투자</u></p> <p><u>2. 다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u></p> <p><u>3.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u></p>

<붙임 1>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고시(안)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조(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영 제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개정 2008.8.25>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관(투자관리전문기관)

3.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5. 「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의2(프로젝트투자 등)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투자금액의 합계는 해당 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1.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 제7조의1에서 정한 프로젝트투자
2. 다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3.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제4조의2(성과보수의 배분 등) ①조합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을 경과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법 제4조의3제6항 및 영 제3조의8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
2.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 의무를 달성할 것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

②영 제3조의8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
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조(투자실적의 보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고할 수 있다.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신고”로 본다

제7조(제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